

제30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2. 9. 30.)에서
의결된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0월 4일

고흥군의회 의장 이재학



규칙 제2022-49호

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별표 1과 같다”를 “별표와 같다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 한다.

제3조제3항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를 신설 한다.

제3조제4항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법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신분증 규격, 제식 및 색상)</p> <p>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, 의회마크,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, 그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<u>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② 신분증 하면 중앙에 의회 마크를 표시하되, <u>그 규격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</u></p>	<p>제3조(신분증 규격, 제식 및 색상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별표와</p> <p>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</p> <p>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직접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「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